

의안번호	제 90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12월 일 (제296회)

**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 
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김봉희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0년 11월 30일

#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봉회의원 대표발의)

발의연월일 : 2010년 11월 30일

발 의 자 : 김봉희·윤성옥·황규철·박문희·  
김종필·정 현·김희수 의원 (7명)

의안 번호	90
----------	----

## 1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을 육성·지원하고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가.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의 수정(안 제1조, 안 제2조 등)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22  
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·지원하고, 과학기술진흥시책을 수립·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”를 “뜻은 다음과 같다.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, “지역”을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라 함은”을 “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전략산업을 집중육성 지원하고, 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·지원하고, 과학기술진흥시책을 수립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지역전략산업”이라 함은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 내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 1조제 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-----이란 ----- -----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2. “지역연구개발사업”이라 함은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</p>	<p>2. -----<u>이</u>란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3. “첨단기술 및 첨단제품”이라 함은 「산업발전법」 제 50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.</p>	<p>3. -----<u>이</u>란 ----- -----<u>따</u>라----- -----.</p>
<p>4. “과학관”이라 함은 「과학관 육성법」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.</p>	<p>4. -----<u>이</u>란----- ----- -----<u>따</u>라-----.</p>
<p>5. “연구개발과제”라 함은 지역연구개발사업 (이하 “연구개발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.</p>	<p>5. -----<u>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6. “연구기관”이라 함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 32조제 2항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, 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을 말한다.</p>	<p>6. -----이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

제11조(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 ① 시·도지사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할 구역의 시·군·구의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·도의 지역전략산업과 해당 광역경제권의 지역선도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1.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
2.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
3.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